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568
등록일자	2015.1.8.
결재일자	2015.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산업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장미경	소간호	이호현	김창현	전결 01/09 주윤중	
협조자					

-강남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2015 강남문화원 지원 계획

□ 관련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설개요

- 설 립 : 1998. 4. 14
- 원 장 : 최병식(1951.1.23생)
- 위 치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건물 3,5층

□ 2015년 지원 계획

- 사업개수 : 10개사업(전통예술경연대회 외)
- 지원금액 : 232,720천원
- 인건비 31,600천원, 사업비 201,120천원

2015. 1. .

강 남 구
(문 화 체 육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보조) •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상기법에 의거, 강남문화원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2015년 계획 수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5년 편성예산 기재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 등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여건 및 예산사항 검토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강남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

2015 강남문화원 지원 계획

각종 문화예술 사업 추진 및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강남문화원의 2015년도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강남문화원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II 일반 현황

- 설립 : 1998. 4. 14
- 원장 : 최병식(1951.1.23생)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건물 3, 5층
- 시설 : 사무실3, 강의실4 (563.89㎡ (3층: 515.29㎡, 5층: 48.60㎡))
- 이사회 및 조직
 - 이사회 : 총 23명(원장(1), 감사(2), 고문(2), 부원장(3), 이사(15))
 - 조직 : 원장 1, 사무국장 1, 직원 3명

III 2014년 사업실적

- 사업건수 : 총 15개 사업
- 집행예산 : 289,152천원(구비지원 201,120천원, 기타 시비 및 자부담)

(단위:천원)

시기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구비	기타 (자부담, 시비 등)
1~12월	문화강좌(63기~66기)	전통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강좌진행, 30강좌	126,085	92,640	33,445
4~11월	역사문화유적탐방	전국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국내 6회, 해외탐방 1회)	15,611	8,750	6,851
12월	문화특강	강남구민과 문화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실시	1,002	0	시비
5월	제13회 대한민국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판소리,한국무용,타악등전통예술인의 종합경연대회	16,142	15,300	842
11월	제16회 대한민국 강남서예문인화대전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있는 작가 발굴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등	27,703	20,200	7,503
10월	역 말 도 당 제	도곡동 역말도당제를 강남지역의 증점 전통행사로 부각, (주민들의 참여)	18,800	18,800	0
6월	제16회 대한민국 강남미술대전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있는 작가 발굴 한국화, 서양화 부분으로 구분 시상	26,604	22,300	4,304
12월	제16호 문화강남 발간	강남문화원 주요행사, 명사, 작가, 문인, 회원등의 작품수록	11,300	11,250	50
10월	제14회 강남 독후감 공모전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 및 시상	12,413	11,880	533
2월	정월 대보름	민족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 한마당 회원잔치	2,455	0	자부담
4월	강남역사문화연구소	강남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연구소 운영 및 세미나 개최	6,778	0	자부담
2~12월	강남국악예술단	국악문화의 전승 보급을 위한 국악예술단 운영 및 공연	2,005	0	자부담
4~11월	문화해설사 양성사업	강남의 역사, 유래, 문화, 인물, 명소 등을 알리기 위한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12,025	0	연합회
4~11월	국악예술단 봉사사업	강남구 관내의 경노당,양로원 등에 전통문화 나눔을 봉사하는 '강남국악예술단' 운영	9,000	0	연합회
12월	매칭시스템 사업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시스템 구축사업	1,229	0	연합회

IV

2015년 사업계획

□ 사업건수 : 총 14개 사업(구 지원사업 10개)

□ 사업예산 : 201,120천원(구비) 및 기타(시비, 자부담 등)

(단위:천원)

시 기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구비
1~12월	문화강좌(67기~70기)	전통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강좌진행, 30강좌	92,640
4~11월	역사문화유적탐방	전국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4회 실시)	5,000
4월	문화특강	관내 주민과 회원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실시	시비 또는 자부담
5월	제14회 대한민국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판소리,한국무용,타악등전통예술인의 종합경연대회	15,300
11월	제17회 대한민국 강남서예문인화대전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있는 작가 발굴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등	20,200
10월	역 말 도 당 제	도곡동 역말도당제를 강남지역의 중점 전통행사로 부각, (주민들의 참여)	18,800
6월	제17회 대한민국 강남미술대전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있는 작가 발굴 한국화, 서양화 부분으로 구분 시상	22,300
12월	제17호 문화강남 발간	강남문화원 주요행사, 명사, 작가, 문인, 회원등의 작품 수록	6,250
10월	제15회 강남 독후감 공모전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 및 시상	11,880
4월	강남역사문화연구소	강남의 역사와 문화, 유적 등을 발굴, 계승 보존하기 위한 역사문화연구소 운영 및 세미나 개최	2,750
2~12월	강남국악예술단	국악문화의 전승 보급을 위한 국악예술단 운영 및 창단공연(「한명회대감 강남에 뒀다」정월대보름 행사와 연계)	6,000
4~10월	강남의 역사 교육	강남구내 초등학교(5학년), 중학교(2학년)를 대상으로 강남의 역사문화 교육 실시	시비 또는 자부담
2~12월	강남민속자료집 발간	강남의 세시풍속 등 민속자료를 발굴하여 자료집 발간	시비 또는 자부담

V

소 요 예 산

□ 지원예산 : 총액 232,720,000원

○ 인건비 ----- 31,600,000원

○ 사업비 ----- 201,120,000원

□ **인건비 보조**

- 사무국장 2,500,000원 × 4분기 ----- 10,000,000원
- 직원 1,800,000원×1명×12월 ----- 21,600,000원

□ **사업비 보조**

- 문화강좌 운영비 등 10개사업비 ----- 201,120,000원

□ **교부방법** : 문화원 청구에 의거 해당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인건비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단체육성,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비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단체육성,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 서울시 지방문화원 보조금은 간주처리하여 별도 지원

VI

행 정 사 항

-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토록 예산집행지침 시달
- 보조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대한민국 강남서예·문인화대전 등 구청장상 수여시 강남문화원의 보고에 따라 구청장 상장번호 부여